

제322회 정례회
2013. 7. 17.(수)

심 사 보 고 서

충청북도 환경정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심 사 보 고 서

충청북도 환경정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환경정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3. 7. 17.(수)

건설소방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 의 자 : 김영주 의원 외 6명

나. 발의일자 : 2013년 6월 21일

다. 회부일자 : 2013년 6월 25일

라. 상정일자 : 2013년 7월 3일

(제32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2. 제안 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김 영 주 의원)

가. 제안이유

- 상위법령인 「환경정책기본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문 일부를 개정하고, 도민이 알기 쉽도록 용어를 정비하기 위해 조례개정을 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 「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 → 제58조
- 불필요한 조문정비
 - 제2조(정의) → 조례 내용과 불부합하며, 상위법의 내용과도 불일치함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3. 검토보고 요지

(건설소방수석전문위원 : 문 홍 열)

가. 조례개정의 필요성

-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조문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나. 조례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

- 상위법령 「환경정책기본법」의 조문변경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불필요한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개정조례안은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이 없음.

다. 조례내용의 기술적인 사항

- 조문의 표현은 해석상의 논란의 소지가 있거나 조문상호간에 상충되는 내용이 없으며,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간결하고 알기 쉽게 표현하였음.

라. 검토의견

- 「충청북도 환경정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조례개정의 필요성과 정당성이 인정되므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환경정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환경정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환경정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37조 규정에 의한”을 “제58조 규정에 따른”으로, “운영에 관하여”를 “운영에”로 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제3조제2항 중 “위원은”을 “위원장은”으로, “위원중”을 “위원 중”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잔임기간으로”를 “남은 임기로”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기타 위원으로서의 품위등을”을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로 한다.

제7조제1항 본문 중 “때에 이를”을 “때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지체없이”를 “지체 없이”로 한다.

제9조 중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1조(목적) 본 조례는 환경정책 기본법 제37조 규정에 의한 충청북도 환경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 <p>제1조(목적) ----- ----- 제58조 규정에 따른 ---- ----- ----- 운영에 ---- ----- -----.</p> |
|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p> <p>1. “환경”이라 함은 자연의 상태인 자연환경과 사람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재산의 보호 및 동식물의 생육에 필요한 생활환경을 말한다.</p> <p>2. “영향”이라 함은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에 변화를 가져오는 모든 직접적인 영향과 간접적인 영향, 유익한 영향과 해로운 영향, 단기적 영향과 장기적 영향을 말한다.</p> | <p>제2조 <삭 제></p> |
| <p>제3조(구성) ① (생 략) ② 위원은 경제부지사가 되고,</p> | <p>제3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은 -----</p> |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로 하고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 2. (생략)

④ (생략)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 4. (생략)

5.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으로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제5조(임기) ① (생략)

② 제6조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궐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 4. (생략)

5. 기타 위원으로서의 품위등을 손상,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 위원 중-----
-----.

③ ----- 각 호-----
-----.

1. · 2.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제4조(기능) ----- 각 호
-----.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의 -----

제5조(임기) ① (현행과 같음)

② -----

----- 남은 임기로 ----.

제6조(위원의 해촉) -----
-- 각 호-----

-----.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

제7조(회의) ① 회의는 도지사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③ (생략)

④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실비보상) 위원회의 위촉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회의) ① -----

----- 때에 -----.

-----.

②·③ (현행과 같음)

④ -----

----- 지체 없이 -----

-----.

제9조(실비보상) ----- 위촉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

상조례」-----

---.

관 계 법 규

□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환경정책위원회)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자문을 수행하는 중앙환경정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제14조에 따른 국가환경종합계획 및 제17조에 따른 중기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환경기준·오염물질배출허용기준 및 방류수수질기준 등에 관한 사항
 3.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의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 등 가축분뇨의 처리·자원화를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5.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녹색제품구매촉진기본계획 등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6.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5조에 따른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 기본계획 등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를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7.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환경시험·검사발전기본계획 등 환경시험·검사 및 환경기술 분야의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8.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제12조제3항, 제16조제1항 및 제25조제1항에 따른 유해물질 함유기준 설정, 재질·구조의 개선, 재활용비율 등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환경정책·자연환경·기후대기·물·상하수도·자연순환·지구환경 등 부문별 환경보전 기본계획이나 대책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과 위원장 또는 분과위원장이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 ② 지역의 환경정책에 관한 심의·자문을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환경정책위원회를 두며,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시·군·구환경정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는 위원장과 10명 이내의 분과위원장을 포함한 2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위원장은 환경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정된 사람이 공동으로 하고, 분과위원장은 환경정책·자연환경·기후대기·물·상하수도·자원순환 등 환경관리 부문별로 환경부장관이 지명한 사람이 된다.
- ⑤ 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제2항에 따른 시·도환경정책위원회 및 시·군·구환경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 및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현행조례

충청북도 환경정책위원회 조례

제1조(목적) 본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 규정에 의한 충청북도 환경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6. 8.16, 2012. 1. 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환경"이라 함은 자연의 상태인 자연환경과 사람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재산의 보호 및 동식물의 생육에 필요한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영향"이라 함은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에 변화를 가져오는 모든 직접적인 영향과 간접적인 영향, 유익한 영향과 해로운 영향, 단기적 영향과 장기적 영향을 말한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위원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경제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1996. 8.16, 2013. 4. 25>

③ 위원은 다음 각호로 하고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0. 3. 13, 2006. 12. 22, 2008. 7. 1, 2010. 8. 11, 2011. 12. 30, 2013. 4. 25>

1. 당연직위원 : 농정국장, 바이오환경국장, 균형건설국장

2. 위촉위원 : 환경보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삭제 2000. 3.13)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환경보전 기본대책에 따르는 도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환경기준에 관한 사항

3. 특별대책지역의 지정에 따르는 특별종합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4.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위한 사업장에 대한 비용부담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5.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으로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제5조(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제6조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궐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위원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기밀등 심의사항을 누설할 때

3. 위원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할 때

4.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5. 기타 위원으로서의 품위등을 손상,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7조(회의) ① 회의는 도지사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일시, 장소, 토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심의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환경정책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팀장이 된다.<개정 2000. 3.13, 2010. 6. 30, 2012. 1. 13>

제9조(실비보상) 위원회의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 6. 30>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